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19
----------	------

제출년월일 : 2014. 3. 3/.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상위법 조문에 맞추고, 쉬운 용어 변경(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강화.....(안 제3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함.
 -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 제정조례안 : 불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제33조,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

- 입법예고 : 2015. 2. 5. ~ 2. 25.(20일간)
- 예고결과 : 질의응답(행정자치부, 법제처)의견 반영(검토결과 별첨)

기타 참고사항 : 불임

- 질의응답
- 관련법령
- 현행조례
 -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입법예고결과
- 방침문서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0조”를 “제68조”로, “안산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를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로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제4조 본문 중 “위촉위원”을 “민간위원”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같은 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 ·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및 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제7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소관 실·과		예 산 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예산과장 최종재
	담당·팀장 직위·성명	건전재정계장 이억배
	담당자 성명·전화	고명화 (행정 3029)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과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u>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68조 ----- ----- ----- ----- -----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 ----- -----.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 2.(생략) 3. 기타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에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조(기능) <u>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2.(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대학교수·시의원·시민단체 대표·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 ----- 1명 --- 15명 ----- --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5조(회의) ①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 공시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 ~ ⑤(생략)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

제4조(임기) 민간위원 -----
- 한 차례만 -----
-----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 -----.

제4조의 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 · 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 · 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 ·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 · 기피 · 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삭제>

③ ~ ⑤(현행과 같음)

제7조(간사) -----
----- 1명 -----.

안산시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617
----------	------

제안년월일 : 2015. 4. 16.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관련법의 규정을 인용하여 조례 내용을 알기 쉽게 하고, 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재개정을 최소화 함.
- 공무원인 위원을 관련 조문에 모두 열거하여 혼선을 방지함.

■ 주요골자

-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의 제한을 규정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의 일부 문구를 조례에 인용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1항)
- 부위원장인 기획경제국장(안 제3조제2항)도 위원이므로, 공무원인 위원을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추가하여 이 호에 공무원인 위원 전부가 명시되도록 함.(안 제3조제3항제2호)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를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복지문화국장” 을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으로 수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產生한다.</p> <p>③ 위원은 대학교수·시의원·시민단체대표·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p>	<p>제3조(구성)</p> <p>① ----- --1명---15명----- ----- 구성하여,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다.</p> <p>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u>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u></p> <p>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2.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p> <p>④ -----<u>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u></p>	<p>제3조(구성)</p> <p>① ----- -----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후단의 경우 해당분야 여성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산시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u>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u></p> <p>④ (개정안과 같음)</p>